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 [올림픽대로~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]

- 점검일시 : 2017.08.01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한종수,전용현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

- 세륜기의 전류인입용으로 사용중인 분전반은 월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기 바람.
- 아울러 세륜기 분전반 단자함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감전재해가 우려되니 충전부 덮개를 설치 후 사용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

- 맨홀(1m×1m) 상부에 설치한 덮개가 미고정되어 있으니 고정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현장에 반입된 건설기계(1톤 롤러)의 시동키가 본체에 매달려 있으니 작업이 없을 때에는 시동키를 분리 보관하기 바람.
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(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9(건설기계)

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굴삭기 후방에 “작업반경 내 접근금지” 표지를 부착하기 바람.
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2(굴삭기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인양중인 이동식크레인(카고)은 지반의 부등침하로 인한 전도재해 예방을 위하여 지반 다짐을 실시한 후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기 바람.

-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33 (이동식크레인)

